

201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수산식품정책 (축산분야)

농림수산식품부

1.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시행

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(☎ 02-500-1815)

-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 지원을 201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 - 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이며,
 -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을 한다.

- 주요내용
 - (융자 대상 금액) 입학금, 수업료, 기성회비에 한함
 - (융자 조건) 무이자 융자
 - (상환 기간)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, 1학기 분을 1년 단위로 상환
 - (상환 방법) 상환은 월별 균등 분등 상환 방법에 의함

☞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<http://www.kosaf.go.kr/>) > 학자금대출 > 학자금 대출소개 >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> 지원자격(2012.1.2일부터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)

2.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 확대 시행

농림수산식품부 재해보험팀(☎ 02-500-1604)

- 이상기후 및 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농어업 재해보험을 실질적인 재해대비 농어업경영안정 장치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적용대상 품목 등을 확대하여 운영한다.
- 현재 보험적용 대상을 농작물 30품목, 가축 15축종, 양식수산물 5어종에서 농작물 35품목, 가축 16축종, 양식수산물 10어종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.

〈농어업재해보험 적용 대상 확대 품목〉

*신규도입(11개) : 인삼, 오디, 파프리카, 멜론, 녹차, 오소리, 참돔, 감성돔, 돌돔, 쥐치, 기타볼락

-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전국시행 적용 품목을 현재 12품목에서 18품목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게 된다.

☞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

(<http://www.maffaf.go.kr>) > 농림수산사업시행지 침서 > 검색 > 농어업재해보험사업

3. 구제역 백신비용 50% 분담

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(☎ 02-500-1528)

- 2012년 1월 1일부터 전업규모(소 50마리, 돼지 1,000마리) 이상 축산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을 50% 분담해야 한다.
- 2011년에는 국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예방접종 결정에 따라 정부에서 구제역 백신을 일괄 구매하여 축산농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공급했다.
- 하지만 축산농가의 책임분담 원칙 확립을 위해 지난해 3월 「가축 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」을 발표하고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구제역 백신 비용을 분담키로 했다.
- 전업규모(소 50마리, 돼지 1,000마리) 이상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백신을 인근 축협동물병원에서 50%의 가격만 지불하고 구매하면 되고, 나머지 50%는 정부에서 부담한다.
- 다만, 전업규모 이하 소·돼지 농가와 염소·사슴 농가는 종전대로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한다.

☞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

(<http://www.maffaf.go.kr>) > 정책홍보 > 검색 > 가축방역사업

4.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실시

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(☎ 02-500-2080)

- 2012년 2월 5일부터 농장동물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강화된 기준의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농장에 대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실시하고, 그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.
-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는 농장동물의 사육과정에서 동물의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윤리적으로 생산된 축산물을, 축산농가에게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,
- 올 2월 5일부터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작으로 하여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다른 축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-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심사 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부여한다.
- 주요내용
 - ① 인증축종 : 2012. 2. 5일 산란계를 시작으로 돼지(13년), 육계(14년) 등으로 확대 예정
 - ② 인증기준 : 축종별 관리방법, 사육시설 및 환경 기준 등

☞ 법제처 홈페이지(<http://www.law.go.kr>) > 법령조회 > 동물보호법

5. 동물보호법 개정

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(☎ 02-500-2080)

-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,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,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실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「동물보호법」이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.
-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으며,
- 그간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는 의무 시행으로 바뀌어 반려동물(개)을 키우는 소유자는 2013년부터 시·군·구에 반려 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. 다만, 농어촌 일부 지역 등은 시행에서 제외된다.
- 또한 농장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도입되어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소비가 가능해진다.
- 이외에도 신고·등록해야 하는 동물생산·수입·판매업의 축종 범위가 개·고양이·토끼 등으로 확대된다. ↗

☞ 법제처 홈페이지(<http://www.law.go.kr>) > 법령조회 > 동물보호법